

소비자피해보상 증서

증서번호			
지급의무자	상호		
	소재지		
	(전화번호:)		
	대표자(성명)		
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			
피보험자 또는 수혜자			
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종류	☐ 보험계약 ☐ 예치계약	☐ 채무지급보증계약 ☐ 공제계약	
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계약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		
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	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		
소비자피해 보상금액	(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-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) × 100분의 ○		

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,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회 사 명
대표이사

(서명 또는 인)

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절차

1.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가.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

나. 소비자피해보상 증서

다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2.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는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.